

2020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12. 11. (금요일),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영운(부위원장), 박전열, 변미혜, 성애순, 원명(김종민), 유정숙,
윤중강, 임재원, 조남규(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인정	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인정	공개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비공개
2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 전문가 검토 및 추천	비공개

【보 고 사 항】

1	무형문화재 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20년도 전통예능분야 전승자 인정조사 추진 결과 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20.10.23.)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김수연을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0.30.~11.30.)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 지 정 일 : 1964.12.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없음. 전승교육사 3명(이수자 19명)
 - 전승교육사 : 정영미(‘58년생/‘95.8.1.인정), 정옥향(‘52년생/‘01.12.27.인정), 조동규(‘45년생/‘88.8.1.인정)

2)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19.1월)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공모(‘19.6.19.~7.31.)
 - ※ 신청서 제출기간 : ‘19.7.17.~7.31.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서면조사) 실시(‘20.5.13.)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제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20.6.19.)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현장조사) 실시(‘20.8.13.)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조사결과 검토(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20.9.11.)
-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심층조사) 실시(‘20.10.7.)

○ 보유자 인정예고 검토(제9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20.10.23.)

- (가결) 김수연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인정예고함.

3) 예고사항(관보 제19866호 / 2020.10.30. / 문화재청 공고 제2020-305호)

○ 대상자 : 김수연

- 예고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김수연 (金秀妍)	여	1948.12.24.	수궁가	서울 동작구 사당로

- 김수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기간 : 2020.10.30.~11.30.

○ 예고결과 : 의견 접수 1건(유선)

- 춘향가 바탕의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한 인정대상자가 수궁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것에 대한 부당함 제기

제출자 (제출방법)	접수의견 요지	문화재청 검토 의견
조○○ (유선)	○ 춘향가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한 인정대상자가 수궁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것은 부당함.	○ 서면조사, 실연조사 등을 통해 인정대상자의 수궁가 바탕 전승활동 실적과 기량이 탁월함을 확인함.

라. 검토의견

- 그 간의 경과와 예고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출석 9명, 가결 9명)

- 김수연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로 인정함.

2.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0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20.10.23.)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김일구, 윤진철을 인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20.10.30.~11.30.)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 지 정 일 : 1964.12.24.
- 전승자 현황 : 보유자 1명, 전승교육사 2명(이수자 78명)
 - 보유자 : 송순섭(‘39년생/’02.2.5.인정)
 - 전승교육사 : 김일구(‘40년생/’92.7.1.인정), 김양숙(‘64년생/’94.4.1.인정)

2) 추진경과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포함(‘20.1월)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공모(‘20.4.9.~6.30.)
 - ※ 신청서 제출기간 : ‘20.6.16.~6.30.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서면조사) 실시(‘20.8.6.)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제7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20.9.11.)
- 보유자 인정조사 2, 3단계(현장조사) 실시(‘20.10.15.)
- 보유자 인정예고 검토(제9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20.10.23.)
 - (가결) 김일구, 윤진철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3) 예고사항(관보 제19866호 / 2020.10.30. / 문화재청 공고 제2020-306호)

○ 대상자 : 김일구, 윤진철

- 예고 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및 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인정	김일구 (金一球)	남	1940.8.4.	적벽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윤진철 (尹珍哲)	남	1965.1.10.	적벽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 김일구, 윤진철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 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기간 : 2020.10.30.~11.30.

○ 예고결과 : 의견 접수 2건(홈페이지)

- 판소리의 다른 바탕 인정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4월)에 추진된 적벽가 인정조사에 대해 고령의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 제기 등

제출자 (제출방법)	접수의견 요지	문화재청 검토 의견
조○○ (홈페이지)	○ 판소리의 다른 바탕 인정조사에 비해 짧은 기간(4월)에 추진된 적벽가 인정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 제기	○ 판소리 적벽가 인정조사는 무형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3 단계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다소 시간이 단축된 것임.
	○ 보유자 인정에 있어 연령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나, 인정예고자 중 1명은 '40년생임. 실제 지난 여름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판소리 전수 교육조교에서 바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전수교육조교도 있음.	○ 보유자 인정 시 고령이라 할지라도 인정조사를 통해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경우 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판소리 전수교육조교(강○○)의 명예보유자 인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
윤○○ (홈페이지)	○ 부부를 모두 보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수많은 전승자들에게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으며, 부부가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	○ 보유자 인정은 인정 대상자의 전승 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함. ○ 보유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출자 (제출방법)	접수의견 요지	문화재청 검토 의견
	된다면 심사의 공정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함.	관련법에 따라 인정 해제할 수 있음.

라. 검토의견

- 그 간의 경과와 예고결과 등을 참고하여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출석 9명, 가결 9명)
 - 김일구, 윤진철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적벽가)’ 보유자로 인정함.

붙임 : 인정예고 이의제기 서류 각 1부.

문화재 지정예고



제목 최근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 인정예고를 보면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11-13

조회수 11

문화재청에서 그 동안의 보유자 인정 과정을 살펴보면,
2018. 7. 31. 홍보가와 심청가 보유자 신청 공모후 홍보가는 지난 6월에, 심청가는 9월에 보유자를 각각 2명씩 인정하였습니다
홍보가와 심청가는 보유자 공모에서부터 인정에 걸린 기간은 각각 23개월과 26개월이었고,
뒤이어 수궁가는 2019. 8.30. 보유자 신청 공모를 마친 후 14개월만인 지난달 인정예고했지요

이렇듯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 비로서 보유자로 인정한 것이고 이런 검증 절차는 여타 다른 분야의 예능 보유자 인정 과정과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10월에 적벽가 인정 예고를 보면서 위와 같은 검증 기간과는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인정예고 후보자 중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는,
이번 적벽가 공모는 올해 6월 30일 공모 마감하여 4개월도 안 돼 벌써 보유자 인정예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선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는 보유자 인정조사 기간이 길게는 26개월 짧게는 14개월 걸쳐 진행된 것에 비하면 4개월도 안된 적벽가 인정 조사기간은, 인정 조사 이전부터 특정 후보자를 정해 놓은 듯한 느낌과 또한 수박 겉핥기식 조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유자 인정에 있어서 연령도 중요합니다
한때 보유자나 전수조교 연령이 80세 이상이면 명예보유자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유자 인정에 있어서 연령도 중요한 요인이기도한데, 실제로 지난 여름에는 본인의사외에도 고령(78세)이라는 이유로 전수교육조교에서 바로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적벽가 전수교육조교도 있었지요
이번에 적벽가 인정예고된 분중 한 명은 40년생으로한두달 뒤엔 우리나라 82세가 됩니다
그 분의 건강상태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78세의 명예보유자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4개월이라는 너무 짧은 인정조사 기간은, 해를 넘기면 인정 예고된 분이 나이가 더 많아져 부담될 듯하니 이렇게 비상식적인 조사 기간을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남는 것이지요

수정

삭제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



문화재 지정예고



제목	적벽가 보유자 인정은 제고해야 합니다
작성자	
작성일	2020-11-20
조회수	36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제5호 판소리(판소리) 보유자는 현재 인정된 보유자 포함하여 총8명으로 우리나라 판소리를 대표하는 명사들입니다.

문화재는 실력과 인격,대중적 덕망도 갖춰야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판소리 전승자들이 평생 한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자리이며 그 명예 또한 대단한 것이고요.

바늘구멍에 낙타들어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심청가 보유자인 김*자의 배우자가 이번 적벽가 보유자로 인정예고되어 있다고 하니, 그 분들에게는 가문에 영광일 수 있겠지요.

게다가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선망의 대상인 신재효의 동리 대상도 각각 수상하신 분들이기도 하고요

누구도 감히 따라 올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넘 볼 수 없는 실력의 소유자라면 보유자 인정에 탄지를 걸을 수 없겠지만 해마다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들만 해도 족히 14명 이상은 쏟아져 나오고, 이 상은 어느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순위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유자 실력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감히 따라 올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넘 볼 수 없는 실력 정도가 아니라면 보유자 인정은 나이, 지역, 유파 등등을 안배하여 인정해야 되고 그래야 판소리 전승환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소리 전승자들이 평생 한 번쯤 상상이나 해 볼 법한 그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부부에게 모두 인정한다는 것은 수많은 전승자들의 희망을 허탈하게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수한 전국판소리경연대회에는 보유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심사의 공정성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폐해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적벽가 보유자 인정은 제고해야 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63

검 토 사 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비공개함.

2.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가. 제안사항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에 대한 종목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함.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지정가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2019년 제15차 무형문화재 위원회(‘19.11.15.) 의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종목에서의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종목 지정 예고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19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무형과 →광역시자체 / ‘18.10.11.)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신규종목 지정 의견 제출(황해도→무형과 / ‘18.12.12.)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포함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신규종목 지정 신청서 제출(황해도→무형과 / ‘19.4.18.)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지정가치 조사 사전회의 실시(‘19.7.3.)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지정가치 조사(서면조사) 실시(‘19.7.30.)
- 신규종목 지정가치 조사결과 검토(제15차 무형문화재위원회 / ‘19.11.15.)
 - (보류)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종목에서의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여부 확인 후 재검토함.

2)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의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여부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공개행사현황 : ‘20.7.31.(금), 15:00~/소월아트홀(서울 성동구)
- 전수교육현황 : ‘20.11.18.(수), 10:30~12:30/국가무형문화재 전수회관(서울 강남)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 :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내용 : 선소리산타령보존회의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현황

- 보존회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현황 파악
- 서도선소리산타령 전승현황 자료 검토

라. 검토의견

-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은 일부 곡목을 나열한 것으로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명칭이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며, 역사성과 학술성에서 경기소리와 구별되는 음악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기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에서 서도선소리산타령을 전승하고 있으므로 대표성이 미흡하고, 현재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단체의 기량이 부족하여 사회문화적 가치 및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조사자의 의견이 다수임.
-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보존회에서는 경기·서도 산타령을 유사한 비중으로 전수교육·공연하고 있으며, 경기선소리산타령과 서도선소리산타령의 기예능 수준은 산타령의 예술적 가치를 고양 시키는데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임.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검토할 사항 : 국가무형문화재 ‘놀량사거리(서도산타령)’ 지정 검토

바. 의결사항

- 부결함(출석 9명, 부결 9명)
 - 이북 5도 무형문화재로 존치함.

3.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 인정조사 전문가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 고 사 항

1. 무형문화재 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20년도 전통예능 분야 전승자 인정조사 추진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 및 각종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고, 전승자 충원을 위한 인정조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20년도 전통예능 분야 전승자 인정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2020년도 무형문화재 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계획을 검토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예능 분야 전승자 인정 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전승자 지원 현황
 - 전승활동 실태조사 실시('20.8월)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코로나19에 따른 전승활동 실태조사

('20.8.6.~8.28./무형문화재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주요 애로사항은

- ▲전수교육 정상적 진행 어려움(47%)
- ▲공연·전시 활동기회 축소(38%)
- ▲전승활동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증가(12%) 등으로 조사됨

- 전승자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제적 지원 실시
 - 비대면 전수교육을 폭넓게 인정하여 전수교육지원금 지속 지원
 - 전승취약종목 추가지원금 조기 지원(1차: 4월/ 2차: 9월)
 - 전승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상위 60%→100%) 및 조기 지급(11월 초)
 - * 장려금 평가등급 단순화 및 지급률 차이 완화

○ 2020년도 전통예능 분야 전승자 인정조사 추진 결과

구 분	종목명	결과
보유자	판소리(흥보가)	2명 인정 (정순임, 이난초)
	판소리(심청가)	2명 인정 (김영자, 정희석)
	판소리(수궁가)	1명 인정예고 (김수연)
	판소리(적벽가)	2명 인정예고 (김일구, 윤진철)
	줄타기	부결
보유단체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부결
전승교육사	처용무	1명 인정 (한수문)
	진주검무	부결
	발탈	조사 예정('20.12월)
합계	총 9개 종목 조사 실시	보유자 인정(4명), 보유자 인정예고(3명), 전승교육사 1명 인정
이월	보유자 : 판소리(고법)(1단계 조사 완료), 대금산조 전승교육사 : 좌수영어방놀이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출석 9명, 접수 9명)